|  |  |  |
| --- | --- | --- |
| **오염물질배출비 등 행정사업성비용 징수 중지에 관한 통지**  재세[2018]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발전개혁위•물가국•환경보호청(국)•해양및어업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오염물질배출비의 환경보호세 전환 사업의 정책 연결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행정사업성비용 항목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재종[2004]100호), <<정부의 비조세 수입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재세[2016]33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비 등 행정사업성비용 징수 중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적으로 오염물질배출비와 행양공사오염수배출비의 징수를 중지한다. 오염물질배출비는 오염수배출비, 폐가스배출비, 고체폐기물•위헙폐기물배출비, 소음기준초과배출비 및 휘발성유기물질배출비를 포함하며;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는 생산성오염수및기관실오염수배출비, 착정이수및굴착찌꺼기배출비, 생활오염수배출비 및 생활쓰레기배출비를 포함한다.  2. 각 징수집행부서는 2018년 1월 1일 전까지 오염물질배출비와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관련 청산•추징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여 응당히 징수하여야 하는 바를 전액 징수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비와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청산수입은 재정부서가 규정한 경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의 국고에 전액 납입한다.  3. 각 징수집행부서는 규정에 따라 재정부서를 방문하여 재정영수증 반납폐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오염물질배출비와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징수를 중지하는 날로부터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국가환경보호총국의 오염물질배출비 감면 및 납부유예 등 문제에 관한 통지>(재종[2003]38호),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환경보호부의 <휘발성유기물질배출비 징수 시범사업 추진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재세[2015]71호), <재정부•국가계획위원회의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징수 비준에 관한 회답공문>(재종[2003]2호) 등 문건은 동시에 폐지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환경보호부  국가해양국  　　2018년 1월 7일 |  | **关于停征排污费等行政事业性收费**  **有关事项的通知**  财税〔2018〕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环境保护厅（局）、海洋与渔业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做好排污费改税政策衔接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行政事业性收费项目审批管理暂行办法》（财综〔2004〕100号）、《关于印发<政府非税收入管理办法>的通知》（财税〔2016〕33号）等有关规定，现就停征排污费等行政事业性收费有关事项通知如下：  　　一、自2018年1月1日起，在全国范围内统一停征排污费和海洋工程污水排污费。其中，排污费包括：污水排污费、废气排污费、固体废物及危险废物排污费、噪声超标排污费和挥发性有机物排污收费；海洋工程污水排污费包括：生产污水与机舱污水排污费、钻井泥浆与钻屑排污费、生活污水排污费和生活垃圾排污费。  　　二、各执收部门要继续做好2018年1月1日前排污费和海洋工程污水排污费征收工作，抓紧开展相关清算、追缴，确保应收尽收。排污费和海洋工程污水排污费的清欠收入，按照财政部门规定的渠道全额上缴中央和地方国库。  　　三、各执收部门要按规定到财政部门办理财政票据缴销手续。  　　四、自停征排污费和海洋工程污水排污费之日起，《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国家环境保护总局关于减免及缓缴排污费等有关问题的通知》（财综〔2003〕38号）、《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环境保护部关于印发<挥发性有机物排污收费试点办法>的通知》（财税〔2015〕71号）、《财政部 国家计委关于批准收取海洋工程污水排污费的复函》（财综〔2003〕2号）等有关文件同时废止。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环境保护部  国家海洋局  　　2018年1月7日 |